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08

발의연월일: 2024. 10. 8.

발 의 자:황명선ㆍ이광희ㆍ김현정

김우영 • 박수현 • 이병진

모경종 • 문진석 • 이정문

송재봉 • 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액에 대하여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 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의 일부가 삭감되고 있고, 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2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59만여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계감액제도는 사실상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여 수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다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여건을 안정적 으로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안제5 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 및 제7조 삭제 등). 법률 제 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70"을 "80"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급여액 등을"을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	②		
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			
분의 <u>70</u> 수준이 되도록 한다.	<u>80</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			
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			
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			
2제1항에 따른 <u>기준연금액(이하</u>	<u>기준연금액(이하</u>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을		
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			
정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u><삭 제></u>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			
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			
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			
<u>다.</u>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			
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			

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 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 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 금 수급권자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 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권자
-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 | <삭 제> 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 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 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 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 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 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 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 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수 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 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 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 1. 기준연금액
-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

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 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

 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
 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
 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
 자
 -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 에 따른 수급권자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삭 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 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 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 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 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 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 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 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 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 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

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 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생 략)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 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 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 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 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 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 액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 | <삭 제> 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 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 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 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현 행과 같음)

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 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

 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